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(김정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872

발의연월일: 2022. 10. 20.

발 의 자:김정재・이종배・강대식

박정하 • 유경준 • 김학용

정동만 • 윤창현 • 서일준

서범수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인구의 절반 이상이 국토의 12%에 불과한 수도권에 거주하고, 100대기업 본사의 95%가 수도권에 자리하고 있으며, 지역 내 총생산 비중 또한 52%에 달하는 등 국토의 양극화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임. 특히 젊은 인재와 기업은 더 나은 환경을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며 수도권쏠림현상은 더욱 심화되었고, 수도권과 지방도시 간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는 실정임.

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수도권과 지역이 고르게 잘 사는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토공간을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 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비수도권에 사람과 일자리, 자본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지역혁신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등 지방도시의 자생력과 지속 가능성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함. 이에 지방 대도시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혁신산업·주거·문화시설을 결합한 고밀도 복합 혁신공간인 도심융합특구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수도권에 대응하는 혁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도심융합특구 내 지역중소기업 육성·지원 등을 통해 지방도시 활력 제고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가. 목적(안 제1조)

이 법은 고밀도 복합 혁신공간인 도심융합특구의 효율적인 조성, 관리·운영과 혁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·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함.

나. 도심융합특구의 정의(안 제2조제1호)

도심융합특구란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도심에 인재와 양질의 일자리가 모일 수 있도록 산업·주거·문화 등 고밀도 복합 혁신공간을 조성하고, 산·학·연·관이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광역차원의 성장거점으로 설정된 구역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지역을 말함.

다.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의 수립(안 제5조)

국토교통부장관은 10년 단위의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함.

라.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제안 및 지정 등(안 제8조 및 제9조)

시·도지사는 종합발전계획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도심융합특구기본 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도심융합특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으며,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제안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, 「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의견을 들은 후 도심융합특구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도심융합특구를 지정·변경지정할 수 있음.

마. 도심융합특구심의위원회의 설치(안 제10조)

도심융합특구 성과의 평가, 도심융합특구의 지정, 변경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도심융합특구심의위원회를 설치함.

바. 도심융합특구 조성 절차의 간소화(안 제17조)

시·도지사등이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동시에 수립하여 도심융합특구 조성 지정제안을 하는 경우 도심융합특구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함.

사.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절차 등(안 제15조부터 제23조까지)

특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시행자 지정, 실시계획 승인, 인·허가 의제,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, 토지수용, 준공인가 등 사업 절차를 규정하고, 도심융합특구 사업협의체 구성·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
아. 도심융합특구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 및 특례 부여(안 제24조부터 제32조까지)

도심융합특구 지원을 위하여 타법상의 각종 구역·특구·지구·단지·지역·도시 지정 및 조성 시 우선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임시허가 등 규제특례지원, 국·공유재산등의 특례, 사용료 및 조세·부담금 감면을 위한 근거 등을 마련함.

자. 도심융합특구 육성을 위한 입주 지역중소기업 지원(안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)

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융합특구에 입주기업의 육성 및 혁신을 촉진 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, 지역혁신 선도기업을 육성함. 법률 제 호

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법은 고밀도 복합 혁신공간인 도심융합특구의 효율적인 조성, 관리·운영과 혁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·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도심융합특구"란 지역(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)의 도심에 인재와 양질의 일자리가 모일 수 있도록 산업·주거·문화 등 고밀도 복합 혁신공간을 조성하고, 산·학·연·관이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광역차원의 성장거점으로 설정된 구역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지역을 말한다.
- 2. "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"(이하 "특구개발사업"이라 한다)이란 도심 융합특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 다.

- 3. "도심융합특구연계사업"(이하 "특구연계사업"이라 한다)이란 도심 융합특구개발사업과 연계한 계획수립 및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어 제8조 제1항에 따른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으 로서 관계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.
- 4. "지역중소기업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사·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 시·특별자치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자를 말한다.
 - 가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
 - 나.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 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
- 5. "지역혁신 선도기업"이란 지역의 산업과 경제활성화를 선도하는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한 지역중소기업으로서 제34조에 따라 선정 된 기업을 말한다.
- 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심융합 특구 조성 및 육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- 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① 이 법은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 이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제6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. 다만, 「국토기본법」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」에 따른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2장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등

- 제5조(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융합특구 조성·육성의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도심융합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(이하 "종합발전계획"이라 한다)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
 - ② 종합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도심융합특구 기본 목표 및 중장기적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
 - 2.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
 - 3. 도심융합특구의 운영 현황 및 성과의 확산에 관한 사항
 - 4. 그 밖에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-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에게 종합발전계획에 반영할필요가 있는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

시·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-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확정하고, 이를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제22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(이하 "국가균형발전위원회"라 한다)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종합발전계획을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.
- 제6조(도심융합특구 조성·육성의 기본원칙)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발 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.
 - 1. 지역과 도심에 적합한 혁신산업의 생태계 구축
 - 2. 문화·교육·복지·보건의료 등이 복합적으로 갖추어진 정주환경 조성
 - 3. 기업의 창업과 재창업이 용이한 기업환경 조성
 - 4.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공간 창출
- 제7조(도심융합특구 성과의 평가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융합특구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발전계획의성과와 도심융합특구별 운영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.
 -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종합발전계획의 수

립 또는 변경에 활용할 수 있다.

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도심융합특구별로 행정적· 재정적인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.

제3장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및 조성

- 제8조(도심융합특구의 지정 제안 등) ① 시·도지사는 종합발전계획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육성을 위한 계획(이하 "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도심융합특구의 지정(변경지정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제안할 수 있다.
 - ② 시·도지사는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특구개발사업의 사업 시행자와 공동으로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.
 - ③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도심융합특구의 명칭·위치 및 면적
 - 2. 도심융합특구 지정의 필요성
 - 3. 특구개발사업과 특구연계사업의 내용
 - 4. 특구개발사업과 특구연계사업의 사업시행자
 - 5. 특구개발사업과 특구연계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시기
 - 6. 제19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 사업협의체 구성 등 추진체계

- 7. 재원조달방법
- 8. 도심에 적합한 산업 육성 및 앵커기업 유치계획
- 9. 입주기업의 창업 및 성장지원 계획
- 10.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구역·특구·지구·단지·도시의 연계지정 방안
- 11. 기존 설치·운영 중인 기업지원 시설, 인근 교육기관, 연구기관, 행정기관 등과의 연계 협력 방안
- 12. 제30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진흥재단, 제31조에 따른 기업종합 지원센터 및 제32조에 따른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계획 및 운영 방안
- 13.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계획 및 비용 등 지원에 관한사항
- 14. 보건의료·교육·복지·문화·체육·주거시설 설치계획
- 15. 교통처리계획
- 16. 환경보전계획
- 17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·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
- 18. 그 밖에 도심융합특구 조성·육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④ 시·도지사는 도심융합특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공람 또는 공청회를 통하여 미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

들어야 한다.

- ⑤ 시·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의 작성 및 특구개발의 시행의 모든 과정을 총괄 진행·조정하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·산업 등의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사람을 총괄계획가로 선임할 수 있다.
- 제9조(도심융합특구의 지정·변경지정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제안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(이하 "중앙도시계획위원회"라 한다)의 의견을 들은 후 제10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도심융합특구를 지정·변경지정 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생활 및 교통 인프라가 우수한 광역권 거점도시일 것
 - 2. 기업 및 정주 환경 등 입지여건이 우수한 도심지역일 것
 - 3. 대학·연구소·기업·정부부처 등의 집적 및 연계가 가능한 지역일 것
 - 4. 도심 내 유망산업의 육성 및 기업 창업과 성장에 유리한 여건을 갖춘 지역일 것
 - ③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.

-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로 지정을 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, 지체없이 이를 관할 시·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른다.
-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⑥ 도심융합특구를 변경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, "지정"을 "변경지정"으로 본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- ⑦ 제2항에 따른 요건의 구체적 기준과 그 밖에 도심융합특구의 지정·변경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0조(도심융합특구심의위원회)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도심융합특구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1. 제7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 성과의 평가
 - 2. 제9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및 변경지정
 - 3. 제14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의 지정해제
 - 4. 제16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
 - 5. 제17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의 동시 승인

- 6. 그 밖에 도심융합특구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며,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. 이 경우 제5호 및 제8호의 경우 해당 도심융합특구를 관할하는 시·도지사 또는 교육감 소속의 위원회를 말한다.
- 1. 국토교통부 소속의 관계 부서의 공무원으로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
- 2. 도시계획·산업·환경·재해 분야 등의 전문가로서 도심융합특구 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
- 3. 「건축법」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
- 4. 「경관법」 제29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
- 5.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시·도교육환경보호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
- 6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 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·건축전문가·환경전문가로서

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

- 7. 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8조에 따른 대도시 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 람
- 8.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제19조에 따른 시·도지사 소속의 교통 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
- 9. 「산지관리법」 제22조에 따라 해당 도심융합특구의 산지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 권한을 가진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
- 10.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 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
- 11.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4조제5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
- ④ 심의위원회는 제16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제17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의 동시 승인과 관련하여 도시계획·건축·환경·교통·재해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합하여 검토 및심의할 수 있다.
- 1. 「건축법」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
- 2. 「경관법」에 따른 경관 심의에 관한 사항

- 3.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에 관한 사항
- 4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·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
- 5. 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광역교통개선 대책
- 6.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
- 7. 「산지관리법」 제8조에 따른 산지의 이용계획
- 8.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
- 9. 「자연재해대책법」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
- 10.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통합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
- ⑤ 제4항에 따른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에 최종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.
- ⑥ 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.
- 1. 「건축법」에 따른 건축심의위원회
- 2. 「경관법」에 따른 경관위원회
- 3.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시·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
- 4.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

- 113조에 따른 시·도도시계획위원회
- 5. 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에 따른 대도시권광 역교통위원회
- 6.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
- 7. 「산지관리법」에 따른 산지관리위원회
- 8.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 권한을 가진 위원회
- 9. 「자연재해대책법」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
- 10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
- ⑦ 심의위원회는 회의내용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⑧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1조(도심융합특구의 부동산가격안정화조치)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심융합특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도심융합특구 및 인근지역의 토지·건물 등의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심융합특구의 지정으로 인하여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
 - 1. 「소득세법」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

- 2. 「주택법」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
- 3.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 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
- 4. 그 밖에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
- 제12조(도심융합특구 지정 등의 효과) ① 제9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·결정·수립·확정·승인 또는 변경이 각각 있는 것으로 본다.
 - 1. 「경관법」 제7조 및 제13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수립·변경 또는 승인
 - 2. 「수도법」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
 - 3. 「하수도법」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
 - 4. 「하천법」 제10조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변경
 - 5.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·변경
 - 6. 「도시개발법」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
 - 7.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승인,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·변경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혁신지 구의 지정·변경

- 8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 업단지의 지정
- 9. 「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역세권개 발구역의 지정,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계획의 수립
- 10. 「택지개발촉진법」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
- 11. 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 제45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및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
- 12. 「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5조에 따른 투자선도지 구 지정
- 13. 「문화산업진흥 기본법」 제25조에 따른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 의 수립
- 14.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의2에 따른 도 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·변경
- 15. 「소프트웨어 진흥법」 제1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 정·조성
- 16. 「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8조 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계획 수립과 지정
-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도심융합특구를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하려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

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- ③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,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
- 제13조(행위의 제한 등) ① 도심융합특구(특구개발사업과 특구연계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구역은 제외한다)에서 건축물의 건축, 공작물의 설치, 토지의 형질변경, 토석의 채취,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허가를 받아야한다.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 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.
 - 1.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
 -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(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거나 신고로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)를 받아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 - ④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

-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「행정대집행법」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.
-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.
-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
- 제14조(도심융합특구의 지정해제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지정·변경지정된 도심융합특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 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.
 - 1.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9조에 따라 도심 융합특구로 지정되거나 변경지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16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
 - 2. 그 밖에 도심융합특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
 -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를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, 관할 시·도지사 및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통보하고,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계 서류의사본을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.
- 제15조(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

호의 자 중에서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(이하 "사업시행자"라 한다)를 지정한다.

- 1. 지방자치단체
- 2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
- 3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
- 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 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(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 다)한 법인
- 5. 「부동산투자회사법」 제49조의3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(같은 법 제14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식 공모가 예정된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한다) 또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(같은 법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)
-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해당 부지에 입주할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- ③ 사업시행자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건설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- ④ 제3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「도시개발법」 제12조를

준용한다. 이 경우 "도시개발사업"은 이 법에 따른 "특구개발사업"으로 본다.

-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.
- 1.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승인 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
- 2. 사업시행자의 부도·파산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특구개발사 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
- 3.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
-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
- 제16조(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) ①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(이하 "실시계획"이라한다)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)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 -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시·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한 후,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 도서, 자금계획, 시행 기간,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

함하여야 한다.

-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관계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.
- ⑤ 제4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 장은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⑥ 그 밖에 실시계획의 승인 절차, 실시계획 승인신청 시 첨부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- 제17조(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의 동시 작성·승인) ① 시·도 지사는 도심융합특구의 신속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 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특구개 발사업의 사업시행자와 공동으로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동시에 작성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동시에 작성한 경우의 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, 제4항 및 제16조제4항, 제5항을 준용한다.
- 제18조(관련 인·허가등의 의제) ① 사업시행자가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·인가·지정·승인·협의 및 신고 등(이하 "허가등"이라 한다)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, 제16조제4항 및 제17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

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.

- 1.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,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·신고사항의 변경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
- 2. 「골재채취법」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
- 3.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
- 4.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0조에 따른 사용·수익허가
- 5. 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 제50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 실시계획의 승인
- 6. 「국유재산법」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
- 7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른 도시·군관리계획의 결정, 같은 법 제40조의2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(이 경우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0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.)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,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,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
- 8. 「농지법」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 허가 또는 협의
- 9. 「도로법」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 사 시행의 허가,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 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

- 10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
- 11. 「도시개발법」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,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 설립의 인가 및 신고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
- 12.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
- 13.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46조에 따른 도시재생 혁신지구시행계획의 인가
- 14.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에 따른 물류 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
- 15.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
- 16. 「사도법」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
- 17. 「사방사업법」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 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 해제
- 18. 「산림보호법」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·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(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)에서의 행위의 허가·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
- 19.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·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·신고
- 20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17조, 제18조,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

- 21.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신고
- 22. 「산지관리법」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,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·신고
- 23. 「소하천정비법」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
- 24. 「수도법」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 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
- 25.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
- 26. 「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른 역세권 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
- 27.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
- 28. 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
- 29. 「주택법」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
- 30. 「집단에너지사업법」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
- 31.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의 승인
- 32. 「초지법」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

- 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
- 33. 「택지개발촉진법」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
- 34.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
- 35. 「하수도법」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(분뇨처리시설만 해당한다)의 설치인가,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
- 36. 「하천법」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,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
-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 해당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의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의 다음 날에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.
- 제19조(도심융합특구 사업협의체의 구성 등) ① 시·도지사는 도심융합 특구를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특구 연계사업 시행자가 참여하는 사업협의체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- ② 사업협의체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은 시·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- 1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
- 2. 제8조제5항에 따른 총괄계획가
- 3. 사업시행자 및 특구연계사업 시행자
- 4. 관계 전문가
- 5. 그 밖에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자
-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업협의체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- 제20조(타인의 토지에의 출입) ① 사업시행자는 도심융합특구의 지정, 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·측량 또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 거나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통 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,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·흙·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하여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, 제131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도시·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"는 이 법에 따른 "사업시행자"로 본다.
- 제21조(토지수용) ① 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·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, 광업권,

- 어업권, 양식업권,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(이하 "토지등"이라 한다) 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9조 및 제17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 지정·고시가 있는 때에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.
- ③ 도심융합특구의 토지등에 대한 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되, 재결의 신청은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다.
- ④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보상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
- 제22조(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) ①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, 새로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.
 - ②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으

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,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「국유재산법」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그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수 있다.

-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특구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- ④ 제1항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에 관하여 사업시행자는 그 특구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그 종류와 세부 목록을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, 해당 공공 시설과 재산은 그 사업이 준공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.
- ⑤ 제3항에 따른 귀속 또는 양도의 경우 「국유재산법」 제44조 및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30조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가액(價額)은 실시계획 승인 당시 해당 공공시설의 설치에 드는 예상 비용으로 하고,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에 대한 가액은 실시계획 승인 당시를 기준으

- 로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.
- ⑥ 제1항에 따라 귀속 또는 양도되는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「국유재산법」 제32조 및 제47조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2조 및 제32조에도 불구하고 특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해당 재산에 대한 사용료 및 대부료를 면제한다.
- ① 제3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를 할 때에는 특구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서와 특구개발사업의 준공인가서로 「부동산등기법」에 따른 등기원인(登記原因)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.
-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공공시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3조(특구개발사업의 준공인가) ① 사업시행자가 특구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.
 -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준공인가 신청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준공

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이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-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된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한 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,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.
-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⑥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8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·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 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
- ⑦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에는 특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나설치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다. 다만, 사업시행자가 특구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4장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지원

제24조(도심융합특구 지원을 위한 국가의 협력의무) ① 국가는 지방자 치단체가 도심융합특구에서 다음 각 호의 구역·특구·지구·단지·도시

- 의 지정·조성을 요청하는 경우, 지정·조성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.
- 1.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
- 2. 「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에 따른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
- 3. 「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3 호에 따른 기능지구의 지정
- 4.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의 지정
- 5. 「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
- 6. 「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른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및 제11조에 따른 드론시범사업구역 의 지정
- 7. 「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단 지 조성
- 8. 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 개발특구의 지정
- 9. 「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

- 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
- 10. 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문화도시의 지정
- 11. 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
- 12.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 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
- 13. 그 밖에 도심융합특구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구역의 지정
- 제25조(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특례지원 등) ① 정부는 도심융합특구를 지역 도시의 혁신 실험장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법률에 따른 임시허가 및 실증 등에 관한 특례(이하 "규제샌드박스"라 한다)가 도심융합특구에 우선 적용 및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- 1. 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」
 - 2. 「산업융합 촉진법」
 - 3. 「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」
 - 4.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
 - 5. 「금융혁신지원 특별법」
 - 6. 그 밖에 「행정규제기본법」제5조의2에 따라 우선허용·사후규제 원칙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
 - ② 정부는 도심융합특구 내 제1항에 따른 규제샌드박스를 효과적으

로 지원하기 위하여 규제샌드박스종합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- ③ 제2항에 따른 규제샌드박스종합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6조(기반시설 설치 등에 관한 비용부담) ① 도심융합특구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이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.
 -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심융합특구와 도심융합특구 그 인 근 지역에서 도심융합특구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 다.
 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심융합특구 내 지식산업센터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공지원건축물 설치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있다.
- 제27조(국유재산·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) ① 시·도지사는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에 국유재산·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·구거(도랑)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을, 하천은 환경부장관을, 그 외의 재산은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

여야 한다.

- ③ 도심융합특구 내 국유재산·공유재산은 특구개발사업 또는 특구연 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.
-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사업시행자에게 「국유재산법」 제18조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3조, 제19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도심융합특구 내의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를 사용 또는 대부하여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·용도 등을 고려하여 사용계약 또는 대부계약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- ⑤ 사업시행자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부득이하게 특구개발사업 또는 특구연계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, 사용허가 및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·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다.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용허가 및 대부의 기간을 「국유재산법」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 이내로 할 수있으며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 또는 대부 기간의 연

장을 할 수 있다.

- ⑥ 제5항에 따라 사용 또는 대부하는 재산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「국유재산법」 제32조제1항 및 제47조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2조제1항 및 제3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가액의 10 0분의 1 이상으로 하며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.
- ⑦ 제5항의 국유재산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것으로 한정한다.
- ⑧ 제5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 내 사업을 목적으로 우선 매각하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평가는 도심융합특구로 지정한 날을 기 준으로 한다.
- 제28조(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심융합특구의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0조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, 사용료 감면 대상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제29조(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심융합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및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,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

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·소득세·취득세·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.

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심융합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및 특구연계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·점용료·사용료·비용 등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1. 「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개발부담금
- 2.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 의 점용료·사용료
- 3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0호에 따른 기반 시설설치비용
- 4. 「농지법」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
- 5. 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에 따른 광역 교통시설부담금
- 6.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
- 7. 「산지관리법」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
- 8. 「수도법」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
- 9. 「자연환경보전법」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
- 10.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
- 11. 「초지법」 제23조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

- 12. 「하수도법」 제6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
- ③ 국가는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이 도심융합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- 제30조(도심융합특구진흥재단의 설립) ① 도심융합특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·도지사는 도심융합특구의 효율적·체계적 관리 및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도심융합특구진흥재단(이하 "재단"이라 한다)을둘수 있다. 다만, 해당 도심융합특구에 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관한 특별법」 제47조의3에 따른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단의 기능을 대신하도록할 수 있다.
 -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하되,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
 - 2. 도심융합특구에서 개발하는 산업단지·교육도시·문화·복지·의료·정 보통신·유통·주택사업 육성·지원 및 관리
 - 3. 도심융합특구의 산업단지·교육도시·문화·복지·의료·정보통신·유통 산업의 조성·관리
 - 4. 도심융합특구 내 기업·연구소 등 기관 투자유치 및 지원
 - 5. 도심융합특구 내 미래혁신산업의 사업화 촉진 지원
 - 6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

- 7.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
- ④ 그 밖에 재단의 설립,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⑤ 정부는 재단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3항에 따른 재단의 업무에 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- 제31조(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) ① 시·도지사는 도심융합특구에 입 주한 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치· 운영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도심융합특구 내에 입주하는 중소·벤처기업 등에 대한 기술 지원
 - 2. 도심융합특구 내에 입주하는 산·학·연·관의 연계를 통한 공동기술 개발
 - 3. 도심융합특구 내 과학산업 기술 인력의 교육 및 훈련
 - 4. 도심융합특구 내 연구개발 시설 및 장비의 공동이용
 - 5. 도심융합특구 내 산업과 기술에 관한 정보 교류
 - 6. 그 밖에 도심융합특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
 - ③ 제1항에 따른 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 -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

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
- 제32조(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·운영) ① 도심융합특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·도지사는 도심융합특구 내에서 주민자치센터, 도서관, 보육시설, 노인복지시설, 체육시설 등 행정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제33조(도심융합특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지원)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한 지역중소기업(이하 "입주기업"이라 한다)의 육성 및 혁신을 촉진하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 - 1. 입주기업의 창업 활성화
 - 2. 입주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에 필요한 연구개발
 - 3. 입주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기반 및 환경조성
 - 4. 개발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
 - 5. 입주기업의 인력 양성
 - 6. 입주기업 제품의 판로 확보
 - 7. 입주기업의 수출 또는 해외시장진출 등 국제협력 지원
 - 8. 그 밖에 입주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- 제34조(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육성 등) ① 시·도지사는 고용안정, 수출

증대 등 관할 지역의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입주기업을 지역혁신 선도기업으 로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.

- 1.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의 수립 지원
- 2. 재정, 금융 등 행정적·기술적·재정적 지원
- 3. 기술·인력·금융·경영·해외진출 등 사업에 대한 지원 및 분야별 전문가의 파견·알선
- 4. 특허, 기술동향 등 기술혁신을 위한 정보의 제공
- 5. 해외진출 전략에 대한 지도 및 자문
- 6. 그 밖에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·재 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.
- ③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 요건 및 절차,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35조(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취소 등) ① 시·도지사는 지역혁신 선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 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을 받은 경우
 - 2. 부도,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

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
- 3. 제34조제3항에 따른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
- 4.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
- 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기업에 이를 알려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1.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
- 2.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
- 3. 명백한 의사로 의견제출을 포기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 출을 지연하는 경우
- ③ 그 밖에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.

제5장 보칙

제36조(보고 및 검사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특구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,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 실, 사업장,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특구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나 회계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
-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37조(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) ① 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를 열람·복사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.
 - ② 사업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관보·공보·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음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.
 - 1. 사업시행자가 공람,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
 - 2. 특구개발사업을 위한 실시계획 수립·승인 내용
 - 3. 그 밖에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 -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 각 호에 관한 서류나 도면 등을 특구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, 특구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건축물과 그 밖의 공작물이나 물건등(이하 "건축물등"이라 한다)에 대하여 권리자가 열람이나 복사를

요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외하고 열람이나 복사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.

- 제38조(권리의무의 승계) 사업시행자나 특구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건축물등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(이하 "이해관계인등"이라 한다)가 변경된 경우에 종전의 이해관계인등이 행하거나 이해관계인등에 대하여 행한 처분, 절차, 그 밖의 행위는 새로 이해관계인등이된 자가 행하거나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- 제39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, 시·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.
 -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,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.
 -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40조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

- 는 공무원으로 본다.
- 1.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
- 2. 제8조제5항에 따른 총괄계획가
- 3. 제39조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

제6장 벌칙

- 제41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 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
 - 2.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 구개발사업 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, 건축물의 건축,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자
- 제42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- 1.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
 - 2. 제2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
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1. 제36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
- 2. 제36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부과·징수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제22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보고된 성장 거점-네트워크형 균형발전을 위한 도심융합특구 조성방안은 제6조 에 따른 종합발전계획으로 본다.

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에 연번 24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	「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지역중소기업	
244		도심융합특구
	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9조	

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
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호에 (94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(94) 「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에 따른 도심융합특구 개발사업
- ③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에 연번 21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[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] 217 제29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